

# 숙명여자대학교 총장후보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 제 정 : 2020. 4. 23.

■ 관리부서 : 학교법인 숙명학원 사무국

■ 관련부서 : 숙명여자대학교 기획처 기획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숙명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총장선임을 위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후보”라 함은 법인 이사회에 총장으로 추천하기 위해 본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을 말한다.
2. “총장후보 입후보자” (이하 “입후보자”라 한다)는 총장후보 선거의 후보자로 본 규정에 따라 총장후보 선거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라 함은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2항의 정년과정 전임교원을 말하며,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4. “직원”이라 함은 본교 직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의 직원을 말하며, 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5. “학생”이라 함은 총장후보자 선출이 시행되는 학기에 본교의 전일제 정규학위 과정에 등록된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을 말한다.
6. “동문”이라 함은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3장 제11조 제3호에 명시된 상임이사를 말한다.
7. “외부인사”라 함은 본교 구성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3조(총장후보의 자격)** 총장후보는 본교의 창학이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총장으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
2. 학교조직관리 및 행정 능력을 갖춘 자
3.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역량을 갖춘 자
4. 학문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5. 대학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제4조(총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총장후보 선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100일 전에 구성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총 15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 인원과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각 호에서 정한 인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을 경우, 선출되지 않은 인원 에 대해서는 교무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1. 교원 : 총 8인 (교원의 직접투표로 구성)
2. 직원 : 총 3인 (직원의 직접투표로 구성)
3. 학생 : 총 2인 (총장후보 선출 시행년도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 단, 해당년도에 총학생회가 미구성 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인으로 구성)
4. 동문 : 총 2인 (본교 총동문회에서 선임)

- ③ 선관위 위원은 총장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중립의 의무를 지니어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관위 위원이 될 수 없다.
  1. 입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자
  2. 입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자의 배우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5촌 이내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제7조 제1항 제3호의 추천인
-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관위의 대표자로서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장후보 선출 투표 및 개표 등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및 입후보 자격에 관한 사항 심의
  3.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총장후보의 선출 및 임명제정 등의 절차 중 규정 위반 및 부정 사례의 접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
- ⑦ 선관위의 의결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선관위는 제6항의 수행을 위해 본교의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부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⑨ 선관위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총장 임명일까지로 하며, 관련 자료 일체는 법인으로 이관한다.

**제5조(총장후보 선출 시기)** ① 총장후보는 총장의 임기 만료 90일 내지 60일 전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총장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성하며, 공고일 및 선거일 등 선출에 관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입후보자 등록공고)** 선관위는 법인 이사회의 총장후보 추천 요청 공문의 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후보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입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자의 등록은 선관위가 지정한 접수처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무위원인 경우 입후보 등록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현직 총장은 예외로 한다.

1. 입후보자 소개서(학력, 경력, 연구실적, 상벌 사항 등 포함, A4 용지 2장 이내)
  2. 대학경영 및 발전에 대한 소견(A4 용지 4장 이내)
  3. 교원 20인 이상의 추천서(추천인의 서명이 담긴 소정 서식). 단,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교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4. 범죄경력조회서(수사 중인 사건 포함)
  5. 그 외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해 선관위에서 정한 별도의 서류
- ② 외부인사는 교육 및 교육행정 분야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 ③ 제7조 제1항 제3호의 추천인은 1인 입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으며, 특정 단과대학 또는 특정 독립학부에 소속된 사람이 1인 입후보자 추천인 수의 과반을 넘을 수 없다.
- ④ 입후보자는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공개된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선관위를 통해 관계 부처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는 선관위가 심의 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할 경우 모든 입후보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되,

개별의 입후보자가 관계 부처 또는 업무와 관계된 교원 및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⑤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각 입후보자가 제출한 제1항 소정의 서류를 확인 후 입후보 등록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후보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년도 선관위 위원

**제9조(입후보자의 사퇴)** 입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권자)** ① 선거권자는 선거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교원, 직원, 학생, 동문으로 한다.

② 각 선거권자의 선거권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82.0%
2. 직원 7.5%
3. 학생 7.5%
4. 동문 3.0%

③ 각 선거권자 단위의 투표율이 40% 미만일 경우 해당 선거권자 단위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11조(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며, 세부 진행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대학의 현안 등에 대해 공통된 주제를 제시하고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입후보자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입후보자 외 누구든지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하며, 위반 시 선관위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경고, 퇴장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금지행위)** ①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4항의 선전벽보 부착행위
2. 총장후보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해 본교 교원과 직원, 학생, 동문의 개별 방문행위 또는 개별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3. 총장후보 선출 관련 홍보활동을 위하여 본교 교원과 직원, 학생, 동문을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는 행위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하게 하는 행위

② 입후보자의 공약 홍보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그 외 입후보자의 평가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위반한 입후보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자격상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1인 1표, 무기명 투표,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본교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만 가능하며, 투표는 각 차수별로 2일간 진행한다.

③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전체 유효투표율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득표율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1위 득표자가 동점일 경우 2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1위 동점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위 득표자가 동점자일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동점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2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전체 유효투표율의 과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3차 투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2차 투표 결과로 총장후보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

⑤ 선관위는 투표 결과를 개표 완료 즉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총장후보 선출 및 추천)** ① 선관위는 제13조의 투표 결과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며, 선정된 총장후보는 순위 및 득표율을 표기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단, 1위 득표자가 동점자일 경우 2위 득표자를 제외하고 1위 동점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고, 2위 득표자가 동점자일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동점자 모두를 총장후보로 선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선관위는 총장후보 선출 및 법인 이사회에 추천한 결과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직무 독립성과 비밀준수)** ① 선관위 위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직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선관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입후보자 개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 **부칙<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인사에 관한 적용례)** 외부인사는 21대 총장후보 선출 시부터 입후보자로 등록을 허용한다.

**제3조(규정 개정)** 향후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인이사 1인과 선거권이 있는 구성원의 대표들이 함께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법인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